

#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1993. 6. 11.  
산업위원회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6월 2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6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0 회 임시회

· 제2차 산업위원회 (1993. 6. 11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 제안설명자 : 건설기획단장 석 상 태 )

가. 제안이유

수도권과 동·남해안 공업지대 위주의 공업화로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본도에 교통망등 양호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첨단기술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용 차량 정수이체에 따름.

나. 주요골자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 제5조(공무원)중 "필요한공무원21명"을 "필요한공무원23명"으로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 전문위원 : 허 회 )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검토한 바,

관용차량 관리운영규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에서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으로 관용차량 2대의 정수이체

에 따른 공무원(운전원) 2명 증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
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슴

5. 검토 요지 : 없 슴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슴

8. 기타필요한사항 : 없 슴

9. 별 첨

- 청주신산업기술도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